■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통역업무 이행계약서

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(이하 "갑"이라한다)과 중국어 · 일본어 · 기타외국어 통역인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내용) ① "갑"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(일간) 중국어선 · 일본어선 · 기타외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업무의 통역인으로 "을"을 위촉한다.

② 「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」(이하 "규정"이라한다)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비용(일당 원)을 지급하고 "을"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외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조(보수지급) ① "을"은 매 통역업무 종료 시 규정에 근거하여 매월 비용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통역비를 지급한다. "갑"은 "을"에게 매월 「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」에 근거하여 통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외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통역수행) "을"은 외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의 통역을 제공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"을"은 외국어선 어업지도단속 관련 통역 업무 수행 중으로 알게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조사항) "갑"은 "을"이 외국어선 어업지도단속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업무지시) "을"은 외국어선 어업지도단속 통역업무 수행 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통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"갑"과 "을"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.

계약일자 : 년 월 일

"갑"	"을"
소 속 :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	
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2-6	성 명 : (인)
성 명 : 남해어업관리단장 (인)	
연락처 : 064-780-2429	연락처 :